

의안번호	제2834호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

의결사항	
------	--

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고 성 군 수
제출연월일	2024. 8. 27.

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2834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4. 8. 27.

제출자: 고성군수

1. 개정이유

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「건축법 시행령」에서 업무대행건축사 모집공고, 명부 작성·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제10조제2항·제4항·제5항 및 제8항 삭제(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건축법」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

-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: 성별영향평가
· 특이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28038(2024. 7. 11.)호]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: 고성군공고 제2024-1200호
 - 가) 예고기간: 2024. 7. 12. ~ 2024. 8. 1.(20일간)
 - 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- 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- 4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- 5) 비용추계서: 미첨부 사유서 붙임

4. 본 문: 붙임과 같음

고성군 조례 제 호

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성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, 제4항, 제5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여부

3.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

4. 승강기, 보일러, 내화피복, 내화구조, 가스, 전기, 도로점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 필증 교부여부 등(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)

5.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등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여부

⑤ 제2항제2호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관련되는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 선정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권자가 직접 선정한다.

2. 선정방법은 대한건축사협회 경상남도 고성지역 건축사회장(이하 “건축사회장”이라 한다)으로부터 현장조사·검사

<삭 제>

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 명단을 제출받아 명단의 순서에 따라 대행건축사를 지정한다.

3. 업무대행자로 지정된 건축사는 허가권자로부터 사용승인 검사 등을 위한 도면을 교부(세움터 권한지정 포함)받고 현장조사·검사 등을 실시한 후 3일 내에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군수에게 제출(건축행정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)하여야 하며, 건축주에게 검사비용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.

4. 허가권자는 업무대행수수료 금액을 고성군 홈페이지에 연 1회 게재하여야 한다.

⑥ 삭 제

⑦ (생 략)

⑧ 건축사회장은 업무대행자의 선정기준과 검사방법 등을 변경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⑨ (생 략)

⑦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⑨ (현행과 같음)

고성군 건축 조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없음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제2호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「고성군 건축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삭제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작성을 생략함

작성자 : 건축개발과장 정 상 호

참고 1

상위 및 관계법령(발췌)

□ 건축법

제27조(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) ①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건축사법」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4. 1. 14., 2014. 5. 28.>

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·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3. 23.>

□ 건축법 시행령

제20조(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) ① 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, 건축신고,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 11. 28.>

1.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닐 것
2.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직접 선정할 것

② 시·도지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·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(이하 이 조에서 “업무대행건축사”라 한다)의 명부를 모집공고를 거쳐 작성·관리해야 한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. <개정 2021. 1. 8.>

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명부에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해야 한다. <신설 2021. 1. 8.>
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모집공고, 명부 작성·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 <신설 2021. 1. 8.>